## 신탁계약서전후비교표

##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 · ② (생 략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 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 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 자신탁은 다음과 같다. 자신탁은 다음과 같다. 1. 트러스톤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 <삭 제> 2. 트러스톤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 1. 트러스톤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 3.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 모투자신탁[채 2.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 모투자신탁[채 권] 궈] 3.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 ④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④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호와 같다.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F클래스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보 2. F클래스 수익증권 : **퇴직연금** 집합투자 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에 기구 및 퇴직연금보험 가입하는 사업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 는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 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 2. 법 시행령 제268조**제4항**의 규정에 의 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(생략) ②(현행과 같음) 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 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

1. 제17조제1항제1호의 모투자신탁에의

투자는 100%이하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

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

1. 제17조제1항제1호의 모투자신탁에의

투자는 100%이하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

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

른다.	른다.
가. 트러스톤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에의	<삭 제>
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이하로	
<u>한다.</u>	
나. 트러스톤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에의	<u>가.</u> 트러스톤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에의
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	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
한다.	한다.
다.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 모투자신탁	<u>나.</u>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 모투자신탁
[채권]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	[채권]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
80%이하로 한다.	80%이하로 한다.
	다.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 모투자신탁[채
	권]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
	<u>이하로 한다</u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40조의2(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
	수 지급)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
	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
	신탁업자가 상이할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
	생한 신탁업자보수 중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
	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
	하여 가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
	<u>다.</u>
<신 설>	<u>부</u> 칙
	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4년 3월 16일부
	더 시행한다.